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2084 제출연월일 : 2024. 7. 2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18세 미만인 사람 및 피성년후견인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조(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	제5조(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		
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등) ①		
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			
범대원이 될 수 없다.			
1.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	<u>1. 18세 미만인 사람 및 피성</u>		
	<u>년후견인</u>		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